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15. . .	
연월일	(제 회)	

지 방 교 부 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출자	국무위원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구구조 등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수요 비중을 확대하고, 자치단체의 자구노력 촉진을 위해 교부세 감액 대상을 확대하며, 유사한 측정항목을 통합하는 등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동산교부세 사회복지비중 확대(안 제10조의3)

- 1)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 확대, 지역교육 비중 축소

나.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대상 확대(안 제12조제1항)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국고보조사업 소관부처 조사결과 추가
- 2)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업 신설·변경시 협의 및 조정의무 위반사항 추가
- 3) 「지방재정법」 상 지방보조금 관리, 출자출연 관련 규정 위반사항 추가

다. 보통교부세 측정항목 통합(안 별표1)

- 1) 보건비와 일반사회복지비를 보건사회복지비로 통합

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 항목 정비(안 제8조제1항)

- 1)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특별회계로 운용되는 목적세는 제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외의 지방세수입 및 행정 자치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나목 중 “25”를 “35”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20”을 “10”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로서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제3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9의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법령의 근거 없이 지출하였거나 관리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3.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출자 또는 출연 근거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소관 국

고보조사업 조사결과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9.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제4항,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경우로서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지방자치법」 제16조 또는 제171조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

부 칙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은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외의 지방세수입 및 행정자치부령</u> 으로 정하는 세외수입 등으로 한다.	제8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① ----- ----- <u>행정자치부령</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 ----- -----.
1. 특별자치시·시·군 및 자치구: 다음 각 목의 기준 및 비중에 따라 산정한 금액	1.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회복지: 100분의 <u>25</u>	나. ----- <u>35</u>
다. 지역교육: 100분의 <u>20</u>	다. ----- <u>10</u>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u>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 ----- ----- <u>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u>

다.

1. (생략)

<신설>

<신설>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경우로서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결
과나 「지방자치법」 제16조
또는 제171조에 따른 주무부장

보된 경우로서 다음 --.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
라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규
정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9
의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의하
지 아니한 경우 : 법령의 근거
없이 지출하였거나 관리 규정
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
액 이내

3.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
라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
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출
자 또는 출연 근거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4. (현행 제2호와 같음)

5. (현행 제3호와 같음)

6. (현행 제4호와 같음)

7. (현행 제5호와 같음)

<삭제>

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

<신 설>

<신 설>

<신 설>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소관 국고보조사업 조사결과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9.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경우로서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지방자치법」 제16조

② ~ ④ (생략)	<u>또는 제171조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u> ② ~ ④ (현행과 같음)
-------------------	--

[별표 1] <개정 2014.12.30.>

측정항목 · 측정단위표(제5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표시단위
1. 일반행정비	가. 인건비	공무원수	명
	나. 일반관리비	공무원수	명
	다. 안전관리비	인구수	명
2. 문화환경비	가. 문화관광비	인구수	명
	나. 환경보호비	인구수	명
3. 사회복지비	가. 기초생활보장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수	명
	나. 노인복지비	노령인구수	명
	다. 아동복지비	아동수	명
	라. 장애인복지비	등록장애인수	명
	마. 보건사회복지비	인구수	명
4. 지역경제비	가. 농업비	경지면적	천제곱미터
	나. 임수산비	산림 · 어장 · 갯벌면적	천제곱미터
	다. 산업경제비	사업체종사자수	명
	라. 도로관리비	도로면적	천제곱미터
	마. 교통관리비	자동차대수	대
	바. 지역관리비	행정구역면적	천제곱미터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교부세과	
연 락 처	02-2100-3556